

# 유통관련주요법규

## - 상적유통을 중심으로 -

吳 具 煥\*

### 목 차

- I. 서설
- II. 유통시설의 건축관련 법규
- III. 도·소매 영업활동 관련법규
- IV. 유통산업 지원법규
- V. 소비자보호법

## I. 서 설

유통관련 법규를 사법분야와 공법분야<sup>1)</sup>로 나누어 보면 사법분야에서는 상품의 판매등 계약관계, 개인기업 또는 법인기업의 영업활동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민법, 상법을 들 수 있다. 공법분야에는 각 개별법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각종 영업활동 등을 특별히 제한하고 있는 많은 법령이 있으며, 급속한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제정·개정·폐지되므로 항상 최근의 법령집을 활용하여야 하며 행정기관의 고시 또는 지침에 관하여도 정확히 알아 두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상적유통 관련법규를 ①공정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법규 ②소비자 보호법규 ③도·소매업의 조정 및 진흥에 관한 법규 ④상품의 특성을 고려한

\* 통상산업부 산업유통과 사무관

1) 행정상 법률관계에 있어 공·사법의 구별에 관하여는 학설수만도 20-30개가 되며, 현대사회에서는 공법과 사법의 융화경향으로 그 구별의 의미가 별로 없다. 그러나 실정법상 소송절차 또는 적용법규의 결정기준에 따라 제도적으로 구별된다. 김도창, 일반행정법론, 청운사, p. 198-208

법규등 크게 4가지로 분류하기도 하나<sup>2)</sup> 본장에서는 상적유통시설 중심으로 ① 유통시설 건축관련 법규 ②도·소매 영업활동관련 법규 ③유통산업 지원법규 ④소비자보호법규로 나누어 유통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개관코저 한다.

## II. 유통시설의 건축관련 법규

### 1. 도시계획법

유통시설을 설치하려면 우선 입지선정을 위한 각종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도시계획법령에서는 도시계획시설<sup>3)</sup>에 대한 결정기준, 시장의 구조 및 설치, 유통업무 정비에 대한 결정기준 및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시장·유통업무설비를 지상·공간 및 지하에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계획시설로서 설치하나 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장은 도시계획시설인 시장과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법 제16조, 령제12조) 도시계획의 결정에 필요한 중요한 기준 및 도시계획시설의 기준에 관하여는 건설부령(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시장의 종류를 기능별로 다음과 같이 나누고 있으며 도시계획시설(시장)이 아닌 경우에는 참고사항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규칙 제55조)

- 도매시장 : 최종소비자의 자에 대한 물품등의 판매가 행하여지는 시장으로서 도매센터 및 농수산물 도매시장
- 소매시장 : 최종소비자에 대한 물품등의 판매가 행하여지는 시장으로서 시장·정기시장·대형점·대규모소매점·농수산물공판장 및 가축시장

그러나 대부분의 시장에서는 도매와 소매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도·소매의 정도 또는 개설허가조건<sup>4)</sup>에 따라 구분되고 있다.

#### 가. 시장에 대한 결정기준

도시계획시설(시장)에 대한 결정기준은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거래물품의 공급지가 당해 도시 이외의 지역으로서 주로 지역간 물품수송의 중계기능을 가지는 도매시장에 대하여는 유통업무설비계획의 일환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 도매시장은 최종소비자의 소비권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그 기능별로 설치하여야 하며, 교통연결이 용이한 철도역·고속도로 및 도시내의 주간선

2) 崔根根 “일본의 유통환경과 법제분석”, 한국법제연구원, '92.9.25 p27

3) 도시계획시설은 도시의 기능달성을 위하여 도시내에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할 시설로서 도시계획 결정후 도시계획법에 의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설치한다.

4) 도·소매업진흥법제2조(도매센터),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농수산물도매시장), 일본 도매시장법 제2조(도매시장)의 정의규정 참고

도로에 근접한 도시주변부에 결정하여야 한다.

③ 단일 또는 수개의 주구를 소비권의 대상으로 하는 소매시장은 가급적 소비권의 중심부에 결정하여야 하며, 대부분의 이용자가 도로로 접근할 수 있도록 교통시설과 연결되어야 한다.

④ 시장소비권의 정보와 동향을 분석하여 가설시장의 불완전한 기능을 상호보완할 수 있도록 결정하여야 하며, 적절한 배치간격을 유지하여 한다.

⑤ 다수인의 집산으로 인하여 교통체증의 발생등 시장기능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원활한 교통소통을 기할 수 있는 교통시설이 연결되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⑥ 시장기능을 위한 주차장·관리사무소등 제반시설을 합리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가급적 일련의 구획된 부지에 결정하여야 한다.

⑦ 주간선도로의 교차지점 또는 과밀화지역에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일반공업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한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시장(2일이상의 기간마다 주기적으로 개설되는 시장을 말한다)·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및 가축시장은 자연녹지지역에도 결정할 수 있다.

⑧ 시장의 규모는 그 기능에 따라 적정하게 결정하되, 총 점포면적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가축시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text{총점포면적} = P \times \frac{5}{1,000} \times S$$

P : 시장당 이용인구

S : 1개점포당 면적으로서 15제곱미터이상 25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나. 시장의 구조 및 설치

시장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 관한법률·축산법 및 도·소매업진흥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관계법령의 기준을 검토하여야 한다. (동규칙 제57조)

다. 유통업무설비

유통업무설비라 함은 집배송단지, 농수산물도매시장, 화물터미널, 창고등이 동일한 장소 또는 인접한 장소에 설치되어 상호 그 효용을 다하는 다음 시설을 말하며, 제③호 내지 제⑤호의 시설에 있어서 각호중 하나는 이를 제외할 수 있다. (동규칙 제58조)<sup>5)</sup>

5) 유통단지개발촉진법제정(안) 제2조에서는 유통시설을 동규칙의 유통업무 설비보다 매우 확대되어 있다.(유통단지개발촉진법 참고)

① 도·소매업진흥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도매센터나 동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집배송단지 또는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이나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

②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 또는 철도의 화물역

③ 창고·야적장 또는 저장소(소방법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 저장소 및 저장고를 제외한다)

④ 화물적하시설 또는 화물적치용건조물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⑤ 자동차운송사업·창고업 또는 도매업에 제공되는 사무소 또는 점포

라. 유통업무설비에 대한 결정기준(동규칙 제59조)

① 물자수송에 있어서는 지역간 교통과 도시교통의 변환점으로서의, 물자수급에 있어서는 공급자와 수요자의 중계기지로서의 복합적인 기능이 상호 그 효용을 다할 수 있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② 도심지역의 교통혼잡을 경감시키고 유통기능의 효율화를 위하여 지역간의 교통이 원활한 고속도로·철도역·항만등의 접합지점 또는 이에 근접한 도시주변부에 결정 하여야 한다.

③ 물자공급지(지방 또는 공업단지)와의 연결이 용이하고, 도시내 각종 시장 및 집배송소의 교통이 편리한 장소에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전국의 유통체계에 따라 물자의 이동성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⑤ 장래에 있어서 증가하는 물동량과 수송장비의 대형화에 대비하여 유통업무설비의 확충이 가능하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⑥ 주요시설의 주변 또는 과밀지역에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일반공업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한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마. 유통업무설비에 대한 설치기준(동규칙 제60조)

① 가급적 일련의 부지내에 제반 유통기능시설을 합리적으로 집약 설치함으로써 유통업무설비의 효용을 제고하여야 하며, 동일 부지내의 설치가 곤란한 때에는 그 인근에 설치하되 상호 그 효용을 다할 수 있는 관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유통업무설비의 주변환경을 보호하고 각종 교통재해·대기오염·소음·진동 등의 공해방지를 위하여 유통업무설비의 외곽 경계부분에 차단공간지대(녹지 및 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유통구조의 근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냉동시설·기계장치등 과학적인 기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해요인이 있는 시설과 없는 시설을 적절히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③ 유통구조의 근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냉동시설·기계장치등 과학적인 기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해요인이 있는 시설과 없는 시설을 적절히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④ 유통업무설비관리를 위한 부대시설과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적절히 설치하여야 하며, 유통업무설비의 특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상호관련성있게 설치하여야 한다.

⑤ 유통업무설비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 외에 화물터미널·철도의 화물역·도매센터 및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바. 도시계획구역·지역·지구제에 따른 규제

도시내 토지의 용도에 관한 분류로서 구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직접 결정·고시하는 6개구역이 있으며, 지역은 13개의 용도지역으로 세분되고 결정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다. 용도지역에 따라 건축물의 형태, 배치, 구조, 밀도등에 관한 입체적 기준을 사전에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구를 지정하며, 지구는 용도지역과 달리 토지마다 반드시 지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지역 또는 지구 내에서의 건축행위 제한은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구역별로 건축가능한 판매 및 창고시설>

○ 관련규정 : 도시계획법 제20조 내지 제20조의 4, 영 제19조 내지 제20조 및 규칙 제7조

구역명	건축할 수 있는 시설
특정시설제한 구역	중앙도매시장(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5,000㎡이상), 백화점[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3,500㎡ (서울은 5,000㎡)이상]
시가화조정구역	농수축산업자가 설치하는 창고, 농·수·축협외의 공동구판장·하치장 및 창고, 공장 또는 주택등 신축이 금지된 시설의 근린생활시설로의 용도변경 행위
상세계획구역, 광역계획구역, 도시개발예정구역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경우 건축 가능
개발제한구역	건설교통부령이 종류 및 규모를 정한 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가능 (농림수산업용 건축물, 공익시설, 광공업시설, 부락공동시설등)

2. 건축법

도시계획법 또는 기타의 특별법(예: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건축법령에 의하여 유통시설의 건축이 이루어진다.

1) 판매시설 및 창고시설에 대한 건축제한

도시계획구역은 13개의 지역으로 구분되며, 지역안에서의 건축 및 영업행위 제한은 도시계획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법 및 기타의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지역별로 건축가능한 판매 및 창고시설은 다음과 같다. (건축법 제 45조 및 동법시행령 제65조)

판매시설에 대한 건축규제현황

(건축법시행령 제65조제1항)<sup>6)</sup>

지역명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전용주거 지역	○ 제1종근린생활시설(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이하인 것에 한한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종교 집회장에 한한다)	
일반주거 지역	○ 판매시설 (기존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시장의 면적이 종전의 연면적의 2 <sup>0)</sup> 배를 넘지 아니 하는 범위안의 건축물에 한한다)	○ 판매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하인 것에 한한다) ○ 창고시설
준주거 지역	○ 근린생활시설	○ 판매시설 ○ 창고시설
중심상업 지역	○ 근린생활시설 ○ 판매시설	○ 창고시설

6) '96.1.6 시행예정인 건축법시행령개정(안)에서는 “시장등이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4배”로 확대함

지역명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일반상업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린생활시설</li> <li>○ 판매시설</li> <li>○ 창고시설</li> </ul>	
근린상업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린생활시설</li> <li>○ 판매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이하인 것에 한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판매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li> <li>○ 창고시설</li> </ul>
유통상업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판매시설</li> <li>○ 창고시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린생활시설</li> </ul>
전용공업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 한다)</li> <li>○ 창고시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판매시설(당해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li> </ul>
일반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과 동일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판매시설(당해 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li> </ul>
준공업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 한다)</li> <li>○ 창고시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에 한한다)</li> <li>○ 판매시설(농·축·수산물 판매시설과 당해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li> </ul>
보전녹지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을 제외 하며,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하인 것에 한한다)</li> <li>○ 창고시설(농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li> </ul>

7) 8) 9)

2) 건축허가 및 건축물의 용도변경

층수가 41층이상이거나 연면적이 30만㎡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중앙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며, 다중이용건축물<sup>10)</sup>, 기타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건축법 제4조, 영 제5조) 도시계획구역,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 등에서의 건축물과 기타 구역안에 있어서의 연면적 200㎡이상이거나 3층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있어서도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과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 (건축법 제8조, 제14조, 영 제8조, 제14조)

7) '96.1.6 시행예정인 건축법시행령개정(안)에서는 "유통업의 창고시설도 가능하도록 괄호안의 단서 삭제

8) 조례의 규정에 의한 건축가능대상 시설에서 조례가 정하지 않아도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로 완화

9)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을 추가하고 있음

지역명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생산농지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을 제외하며,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하인 것에 한한다)</li> <li>○ 창고시설(농업·축산업·수산업에 한한다)</li> <li>○ 판매시설(농·축·수산물 판매시설에 한한다)</li> </ul>
자연농지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을 제외하며,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하인 것에 한한다)</li> <li>○ 창고시설<sup>10)</sup></li> <li>○ 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공판장에 한한다<sup>11)</sup>)</li> </ul>

### 3. 기타 관련법령

#### 1) 주차장법

판매시설에는 일정기준의 주차장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주차장법 제19조 및 영 제6조)

- 대규모소매점 : 시설면적 80㎡당 1대이상
- 기타 판매시설 : 시설면적 100㎡당 1대이상의 주차장 시설 확보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연면적 1만㎡미만의 판매시설인 경우에는 당해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장·군수에게 납부함으로써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시장·군수는 주차장정비지구내의 연면적 2천㎡이상의 판매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주차수요가 현저히 증가하거나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3분의2의 범위안에서 당해 시설물의 대지경계선으로 부터 직선거리 300m이내의 장소에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받은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주차장 설치계획서나 설치면제 신청 및 비용납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8조, 제11조),

#### 2)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도시교통정비지역(상주인구 10만이상의 도시)<sup>10)</sup>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유통업무설비를 건설할 경우 교통영향평가

10) “다중이용건축물”이라 함은 연면적 5천㎡이상인 공항청사·철도역사·자동차 여객터미널·종합여객시설·종합병원·판매시설·관광숙박시설·관람집회시설및 16층 이상인 건축물을 말함

11) 도농복합형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



를 받아야 한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3조 및 영 제9조)

① 유통업무설비 신규사업의 시행인 경우

- 중앙심의대상 : 건축연면적 6만㎡이상
- 지방심의대상

- 도심지역<sup>12)</sup> : 건축연면적 5천㎡이상~6만㎡ 미만

- 외곽지역 : 건축연면적 7천㎡이상~6만㎡ 미만

② 건축법에 의한 판매시설용도중 단일용도의 건축물의 신축인 경우

○ 도매시장·소매시장(백화점·쇼핑센터 제외)·상점은 위 ①과 같음

○ 백화점·쇼핑센터

- 중앙심의대상 : 건축연면적 6만㎡이상

- 지방심의대상

- 도심지역 : 건축연면적 3천㎡이상~6만㎡미만

- 외곽지역 : 건축연면적 4천㎡이상~6만㎡미만

\* 복합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심의대상은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것이 1만㎡이상인 복합용도의 건축물의 신축으로 하고 있다.

3)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 일원)안에 판매용시설등을 건축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수도권 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던 규정을 개정하여 과밀 억제권역안의 지역중 서울특별시지역에서 신·증축·용도변경시에만 과밀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 영 제13조 및 제13조)

### III. 도·소매 영업활동 관련법규

유통시설의 출점과 관련하여 도시계획법, 건축법, 주차장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을 검토하여 입지 및 건축에 관한 검토가 있는 다음에는 도·소매의 영업에 관련된 법규로서 도·소매업진흥법,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할부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물가안정에관한법률, 부정경쟁방지법 등 많은 법률이 있다. 예를 들어 소비자보호법, 식품위생법, 약사법, 계량법, 공산품품질관리법, 금융규제관계법, 환경규제관계법들도 유통분야의 영업활동관련 법규이지만 소비자보호법만을 별도로 제4절에서 개관하겠다.

12) “도심지역”이라 함은 업무활동이 활발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말하고 “외곽지역”이라 함은 도심지역 밖의 지역을 말함

## 1. 도·소매업진흥법

도·소매업진흥법은 도·소매업을 진흥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결국 소비자보호와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시장등의 개설허가제를 유지하는 등의 규제 법적 성격과 도·소매업이 대부분 영세·과다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유통시설의 대형화·유통정보화 및 물류표준화를 통해 유통근대화를 촉진하려는 유통조성행정을 뒷받침하는 법률이다. 도·소매업진흥법은 1961.8.31 법률 제3537호로 제정공포된 시장법(市場法)을 폐지하고 1986.12.31일 법률 제3896호로 제정공포되었다. 이 법은 1991.5.31 일부 개정된 후 1995.1.5 법률 제4889호로 전문개정되었다.

### 1) 시장등의 개설허가

매장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시장, 대형점, 대규모소매점(백화점·쇼핑센터) 또는 도매센터의 개설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sup>13)</sup> (법 제5조·시행령 제6조) 이 경우 업태의 결정은 동법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운영기준에 따라 시장등의 개설자가 정하는 것이며, “매장”이라 함은 상품의 판매와 이를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영업장을 말한다. (법제2조제6호)

매장면적에 포함되는 용역업의 종류는 대형점·대규모 소매점·도매센터의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개인 및 가정용품수리업」에 한정되고 있으나 시장의 경우에는 대부분 건물안의 점포를 소규모로 분양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매장면적에 포함되는 용역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확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6조제4항)

#### 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개인 및 가정용품수리업(5060)

나. 건축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생활편익시설(동일건물내에 있는 의료시설포함)용도에 해당하는 도·소매업외의 업종

### 2) 정기시장

일정구역안에서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정기적 또는 계절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自治區의 구청장에 한함)이 개설한 것을 말하며 계절적으로 개설되는 정기시장의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개설한 것을 포함하고 있다.

### 3) 연쇄화사업

연쇄화사업은 다수의 동일업종의 소매점포를 직영하거나 가맹하여 계속적으로

13) 매장면적이 개설허가 기준에 못 미칠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영업을 할 수 있음.

상품을 공급하며 경영을 지도하는 사업으로서 통상산업부장관은 그에 대한 지원·육성에 관하여 「소매상의 연쇄화사업 운영요령」을 고시하여 운영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중소형소매점이 연쇄화사업자(본부)를 통하여 상품을 공동구매하고 공동보관, 공동정보시스템의 설치등 공동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연쇄화사업자에 대해 '74년부터 자금 및 세제지원을 하고 있다.

< 업태별 개설허가 기준 >

구분	정 의	매장면적기준	운영기준
시장	일정구역안의 건물 또는 지하도에 설치된 다수의 점포시설에서 도·소매업자 및 용역업자가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영업장	3천㎡ 이상	-매장의 임대·분양이 가능 -매장면적의 50%를 초과하여 분양한 경우 법 제 12조에 의한 시장개설자 지위를 승계하여야 함
대형점	양판점·합인점·종합점·전문점·편의점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도·소매가 이루어지는 영업장으로서 개설자 직영형태로 운영되는 것	2천㎡ 이상	-매장면적의 100% 직영 -영업장의 점포 임대·분양 불가
대규모소매점	일정구역안의 건물에서 소매업자 및 용역업자가 상품을 소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영업장	4천㎡ 이상	-직영 또는 임대의 형태로 운영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매장을 구성하고 개설자 직영위주의 형태로 운영하는 대규모점포		-매장면적의 50%이상 직영 -영업장의 점포 분양 불가
	백화점·대형점등 영업장을 중심으로 각종 전문점을 배치하여 개설자 직영 또는 임대의 형태로 운영하는 대규모점포의 집단		-개설자 소유의 건물일 경우 매장면적의 100% 임대 가능 -임차건물의 경우 매장면적의 30%이상 직영 -영업장의 점포분양 불가
도매센터	일정구역안의 건물에서 도매업자 및 용역업자가 취급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영업장	3천㎡ 이상	-개설자 소유의 건물일 경우 매장면적의 100% 임대 가능 -임차건물의 경우 매장면적의 10%이상 직영 -영업장의 점포분양 불가

연쇄화사업자에 대한 지원정책

지원내용	지원근거
1. 유통근대화제정자금 지원	도·소매업진흥법 제36조
2. POS시스템등 유통근대화설비투자에 대한 특별세액 공제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3. 대도시지방세 5배중과 면제	지방세법 제138조
4. 주류중개업면허 자격 부여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3조
5. 공동집배송단지사업	도·소매업진흥법 제33조

4) 도·소매업의 지원·육성

가. 유통정보화 및 물류표준화

유통정보화의 구축은 상품판매, 재고, 상품수·발주 등을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고, 상품판매동향 분석을 통한 고객 관리와 회계관리등 유통근대화시설의 기본이라 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중소 유통업체는 영세성, 무자료거래등 구조적인 문제점과 세원노출이라는 잘못된 관행으로 전산시스템의 도입이 매우 부진하며, 단위화물적제시스템의 전제가 되는 화물유통관련 장비와 포장의 종류, 규격등의 물류표준화 역시 저조한 실정이다. 따라서 법 제31조 및 제32조에서는 유통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정보화의 전제조건인 공통상품코드(BAR코드)<sup>14)</sup>, 판매시점정보관리(POS)시스템<sup>15)</sup> 도입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물류표준화·자동화·공동화사업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나. 집배송단지 조성지원

그간 우리경제는 지속적인 성장으로 물류시설에 대한 수요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도로, 항만등 각종 사회간접자본 시설과 물류시설등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매출액 대비 물류비 비중이 '87년의 5.9%에서 '92년에는 8.5%로 매년 증가함으로써 국내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집배송단지의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판매업자만이 건립이 가능하던 집배송단지를 제조업자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판매업자 및 제조업자가 집배송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부지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업단지의 지원시설구역 면적의 100분의 30미만의 부지를 집배송단지의 조성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 제33조, 시행령 제16조)

14) BAR코드는 밝은 막대와 어두운 막대 그리고 두꺼운 막대와 좁은 조합을 이용하여 다양한 정보를 표시하는 정보입력수단임

15) 광학적 자동판독방식의 레지스터에 의해 물품판매시점에서 발생하는 각종 정보를 컴퓨터로 수집, 각 부문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분석, 가공하는 시스템

다. 유통전문인력 양성

도·소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판매사자격시험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판매사자격시험에 있어 유통연수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판매사 시험 각 과목별 성적이 40점이상인 경우 각과목별 점수에 10점의 점수를 가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제38조 시행규칙 제15조)

2.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서는 방문판매(제2장), 통신판매(제3장), 다단계판매(제4장)에 관한 사항을 각장별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95.1.5 개정법률에서는 다단계판매에 있어서 사행적 요소를 갖거나 판매원 또는 소비자의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다단계판매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하였으며 방문판매와 통신판매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재개정 중에 있다.

1) 방문판매

방문판매라 함은 판매업자 또는 용역제공업자가 방문등의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의 장소에서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법 제2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에서 영업소·대리점·지점·출장소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고정된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영업을 하는 장소와 노점·이동판매시설·임시판매시설 등을 영업소등에 해당하는 장소로 하여 이들 장소에서 계약을 체결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는 방문판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다만, 우편의 이용, 전기통신설비의 이용, 광고물의 배부, 음향기기의 사용 기타 상대방의 관심을 끄는 수단 사용 등 상대방을 유인하여 그의 영업소 등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방문판매에 해당되는 것으로 하고 있다. 16)

2) 통신판매

통신판매라 함은 판매업자 또는 용역제공업자가 우편·전기통신 기타 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 제2조)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전화·전보·데이터통신등 전기통신설비의 사용, 우편환의 이용, 우편대체의 이용 및

16) . 방문판매에 있어서 주요개정안의 내용은 ①소비자보호를 위한 방문판매업 신고제를 신설 ②방문판매업자의 금지행위에 방문판매원에게 부담을 지게하는 행위와 하위판매원 모집의무 부과행위를 추가함

· 통신판매에 있어서 주요개정안의 내용은 ①소비자보호를 위한 통신판매업 신고제 신설 ②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 상품대금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상품을 인도하거나 환불조치토록 하고, 상품을 인도할 때 소비자 권리행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상품인도서를 송부토록 함 ③상품을 인도받은 후에도 20일 이내에 청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신설하고 통신판매업자의 금지행위를 신설하고 있음

금융기관 또는 채신관서에 설정된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도 통신판매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 3) 다단계판매

다단계판매라 함은 판매업자 또는 용역제공업자가 특정인에게 다음 항목의 활동을 하면 일정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의 가입이 2단계이상 17) 순차적·단계적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말한다.

① 당해 판매업자 또는 용역제공업자가 공급하는 상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아 이를 소비자들에게 판매 또는 제공할 것

② 가목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특정인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그 하위판매원이 당해 특정인과 동일한 활동을 하도록 할 것

### 4) 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상품 또는 용역

법제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 또는 용역은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고 동조 제2항에서는 상품을 구매하는자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자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방문판매 또는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다단계 판매의 경우에는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관련규정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3조에서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품 또는 용역으로는 다음과 같다.

① 농산물·수산물·축산물·임산물 및 광산물로서 통계법에 의하여 작성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에 의하여 생산된 것이 아닌 것

②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③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

④ 유가증권·어음 기타 채무증서

⑤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용역

⑥ 법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매자들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제조되거나 제공되는 상품 또는 용역

### 5) 방문판매계약 체결전의 고지의무

방문판매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대방이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사항을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법제5조)

① 방문판매업자의 상호·주소·전화번호

17) '95년말 개정예정인 동법규정(안)에는 3단계 이상으로 하여 방문판매원의 정의와 상충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 ② 방문판매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 ③ 상품의 종류 또는 용역의 내용
- ④ 상품의 판매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
- ⑤ 상품대금 또는 용역대가의 지급시기 및 방법
- ⑥ 상품의 인도시기 또는 용역의 제공시기
- ⑦ 청약의 철회와 그 행사방법 등

또한 시행령 제4조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 ① 방문판매자에게 지급할 계약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금액
- ② 계약해제의 사유와 그 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
- ③ 상품의 품질보증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④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

### 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관한법률은 구 도·소매업진흥법의 할부판매에 관한 규정 사항을 1991.12.31 법률 제4480호로 별도 제정한 것이다. 법 제2조에서 계약의 명칭·형식 여부를 불문하고 상품의 대금을 2월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이상 분할하여 지급하는 계약을 법 적용대상으로 하되 시행령 제2조에서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품 또는 용역으로 의약품·보험·유가증권·어음·채무증서 및 회계감사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 1) 할부계약내용의 표시

법 제3조에서 매도인은 할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매수인이 할부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상품의 종류 및 내용, 현금가격 및 할부가격, 각 할부금의 금액·지급회수·시기 및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 등을 표시하고 이를 매수인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 2) 할부계약서의 작성방법

할부계약서의 활자는 9호이상의 큰 활자를 사용하고, 매수인의 철회권 행사등 주요사항은 붉은색으로 기재하며, 철회권행사를 위한 서식을 계약서에 포함시키도록 작성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규칙 제3조)

#### 3)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 계산방법 및 최고한도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 계산방법과 최고한도 계산방법은 복리계산방법과 단리계산방법중에서 선택하여 사용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최고한도는 이자제한법에 의한 금전대차에 관한 최고 이자율인 연 25%로 하고 있다. (시행령 제3조)

할부수수료 계산방법

$$- \text{복리계산방법} : A = P \times r \times \frac{(1+r)^n}{(1+r) - 1}$$

$$- \text{단리계산방법} : R = \frac{F}{P} \times \frac{24}{n + 1}$$

- . A : 월할부금
- . n : 대금지급기간(월기준)
- . P : 할부원금
- . R :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
- . r : 할부수수료의 실제월요율
- . F : 할부수수료의 총액

4) 매수인의 철회권행사

매수인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에 의하여 청약의 철회할 수 있으나 자동차·냉장고 및 세탁기등 사용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상품을 사용한 경우와 할부가격이 10만원(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이하인 할부계약등에는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법 제5조, 시행령 제4조)

5) 매도인의 할부계약의 해제

매도인은 매수인이 할부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 할부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계약을 해제하기 전에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매수인에게 할부금을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최고하도록 하였다. (법 제8조)

6) 매도인의 손해배상청구금액 제한

매수인의 할부금 지급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매도인이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은 지연된 할부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인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지연손해금은 지연된 할부금에 연 25%의 범위내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약정한 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였다. (법 제9조제1항, 시행령 제5조)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법은 경쟁적인 시장구조의 조성과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으로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①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방지 ②과도한 경제력의 집중



방지 ③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④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등에 관한 법이다.  
 불공정거래에 관한 규제강화는 개발과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에서 비롯된 독과점·시장기능의 왜곡을 방지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하여 1980.12.31 법률 제3320호로 제정되었으며 이후 대기업이 횡포방지를 위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1984)과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한 사업자에 있어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하기 위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1986)이 제정되어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의 주요내용은 시장구조의 개선을 위한 규제와 거래행태의 개선을 위한 규제로 나눌 수 있다.

시장구조개선 규제	거래행태개선 규제
①독과점사업자(시장지배적사업자)의 폐해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격의 부당한 결정금지</li> <li>○ 부당한 출고조절금지</li> <li>○ 타사업자의 사업활동방해금지</li> <li>○ 신규참입방해금지</li> <li>○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금지 등</li> </ul> ②기업결합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 금지</li> <li>○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기업결합 금지</li> </ul> ③경제력집중의 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주회사의 설립금지</li> <li>○ 직접 상호출자의 금지</li> <li>○ 출자총액의 제한</li> <li>○ 채무보증의 제한</li> <li>○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li> </ul>	①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격의 결정·유지 또는 변경</li> <li>○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등의 공동결정</li> <li>○ 생산·출고·판매량의 제한</li> <li>○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의 제한</li> <li>○ 설비의 신·중설 제한</li> <li>○ 상품의 종류 및 가격의 제한 등</li> </ul> ②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당한 공동행위</li> <li>○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 제한</li> <li>○ 사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강요 등</li> </ul> ③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등 26개 유형</li> </ul> ④제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⑤불공정한 국제계약체결 금지

자료 : 공정거래관련법규 설명회 자료, 한국백화점협회 '95.5.21, p18

1)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이 법은 많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운용되고 있는바 모든 사업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고시에 의하면 ①거래거절 ②차별적 취급 ③경쟁사업자 배제 ④부당한 고객유인 ⑤거래강제 ⑥우월적지위 남용 ⑦구속조건부 거래 ⑧부당한 표시·광고등 8가지로 고시하고 있다. (법 제 23조제2항, 시행령 제36조제1항 및 제2항)

2) 할인특별판매행위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의 규정에 의한 할인특별판매행위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의 적용대상사업자는 다음과 같다. (법 제23조제1항제3호)

① 도소매업진흥법상 개설허가를 받은 백화점, 쇼핑센터 및 대형점을 영위하는 자

② 연간매출액이 100억원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연간매출액이 10억원이상인 유통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직영점, 대리점 등(이하 “대리점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제3조 또는 제5조 내지 제10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또는 유통업자. 단, 신규사업자의 경우 연간매출액을 정할 수 없었 때에는 일정기간중의 실매출액을 연간매출액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할인특별판매행위』의 정의 및 유사개념

- 할인판매<sup>18)</sup> : 사업자가 사용하는 용어여하에 불구하고 자기가 취급하는 상품에 대하여 일정기간동안 특별히 가격을 할인하여 판매하는 행위
- 가격인하 : 일정기간을 정함이 없이 가격을 인하하여 계속 판매하는 행위
- 상설업가판매 : 상설매장 또는 임시로 특설매장을 설치하여 판매 시기를 놓친 재고 상품 또는 하자가 있거나 열등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 점포정리판매 : 폐업 또는 점포이전을 목적으로 자기가 취급하는 취급하는 상품을 업가로 판매하는 행위

자료: 전개서 p 33, 재판집<sup>18)</sup>

3) 백화점업에 있어서의 특수불공정거래행위

백화점업에있어서의특수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고시에서는 부당반품, 납품 및 판매대금의 부당한 감액 또는 지급지연, 부당한 강요행위, 부당한 수령거부, 판매종업원의 파견강요등, 광고비등의 부당한 전가에 대한 규제를 규정하고 있다.

동고시 제2조에서 백화점업의 범위에 도·소매업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백화점·쇼핑센터·대형점과 도매센터의 개설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소매를 하는 경우의 도매센터를 포함하고 있다.

기타 공정거래와 관련된 고시 또는 지침명은 다음과 같다.

- ①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남용행위 심사지침
- ② 경품류 제공에 관한 공정거래행위 지정고시

18) 할인특별판매물 약칭함

③ 표시·광고에 관한 공정거래지침

5.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1975.12.31 법률 제2798호로 제정된 이 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 및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①가격의 표시 ②공공요금 등의 결정 ③긴급수급조정조치 ④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다만,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에 대한 사항중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이외의 사항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제정으로 삭제되었으며 이 법제3조 동법시행령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통상산업부장관의 고시로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 있다.

1) 가격표시대상 가격 및 품목

가격의 표시는 공장도가격표시, 수입가격표시 및 소매가격표시로 구분하고 공장도가격 및 수입가격표시대상품목, 표시범위 및 표시위치는 동고시 별표 1에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소매가격표시대상품목은 다음의 소매점포에서 판매하는 전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 ① 매장면적이 33㎡이상인 모든 소매점포
- ② 백화점, 쇼핑센터 안의 모든 소매점포
- ③ 기타 읍장, 면장 또는 동장이 지정하는 소매점포

2) 표시가격

① 공장도가격

공장도가격은 제조원가와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에 적정한 이윤과 제세를 가산한 것으로 산정, 표시한다. 다만, 하청주문에 의해 생산된 상품의 경우에는 제조업자가 주문자에게 납품하는 가격을 공장도가격으로 표시한다.

② 수입가격

수입가격은 CIF가격에 수입통관과 관련된 관세, 교육세,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등의 제세와 수입업자의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및 제세를 가산한 가격으로 산정하여 표시한다. 다만, 수입가격표시 의무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 이외에 수입가격표시의무자가 도·소매업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수입자 공급가격”으로 표시)을 별도로 표시하거나 CIF가격, 관세, 교육세 등 수입가격의 구성항목을 세분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관세법 제124조에 의해 매각된 상품의 경우에는 낙찰가격 또는 수의계약가격을 수입가격으로 표시한다.

### ③ 소매가격

소매가격은 소매업자가 적정한 이윤을 가산하여 자신 이 받고자 하는 가격을 표시한다.

## 6. 부정경쟁 방지법

이 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이다.

이 법에서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상표·상품의 용기·포장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분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상표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또는 형법중 국기(國旗)·국장(國章)에 관한 규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영업비밀의 보호에 대한 규정이 91.12.31 개정시에 많이 반영되었다.

## IV. 유통산업 지원법규

유통산업의 지원에 관련된 법령에는 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중소기업관련법령 및 각종 세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그러나 본 절에서는 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과 새로이 입법추진되고 있는 중소기업자구조개선지원에위한특별조치법(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1. 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

1980.1.4 제정된 이 법은 재정경제원에서 통상산업부로 이관토록 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 개정 추진중에 있다. 개정안에 의하면 통상산업부장관은 유통산업의 근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의 장이 제출한 소관별 유통산업의 근대화계획을 종합·조정하여 유통산업근대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각 부처의 장은 유통산업 근대화기본계획에 따라 년차별 유통산업근대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 제3조에서 유통산업의 근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대상사업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① 상품의 보관 및 저장시설 설치와 규격화 및 포장개선 사업
- ② 상품유통경로의 단축 및 도매기능의 전문화를 위하여 설립되는 도매시장의 육성사업

- ③ 생산자와 직거래를 촉진하는 대형소매기구의 육성사업
- ④ 소매상의 협업화 및 연쇄화사업
- ⑤ 시장·점포의 시설 및 경영개선에 관한 사업
- ⑥ 물류의 정보화·표준화·자동화 및 공동화에 관한 사업
- ⑦ 제1호 내지 제6호 이외의 유통산업근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

2. 중소기업구조개선지원에위한특별조치법(안)

정부는 전반적인 경기호황에도 불구하고 산업구조 조정과정에서 어려움 등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자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존 제도<sup>19)</sup>와 시책의 지원체계로는 원활한 지원이 어려웠던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사업전환 및 시장개개발촉진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마련된 특별법(안)<sup>20)</sup>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정부는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경영안정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따라 매년 구조개선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도록 함(안 제3조)

나.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상당수의 중소기업들이 심각한 애로를 겪는 경우에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을 수립,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재래시장의 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재개발을 쉽게 하기 위한 절차상의 특례<sup>21)</sup>를 정함(안 제6조)

마. 중소기업의 연쇄도산방지를 위한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영체제를 개편하여 공제사업을 활성화하도록함(안 제7조 및 제8조)

바.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금 결제조건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공표하는 한편,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대하여 대금으로 발행하는 어음의 장당금액을

19) 중소기업관련법령 : 중소기업관련 법령으로서 ①중소기업기본법 ②중소기업 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③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 관한법률 ④중소기업협동조합법 ⑤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 있다.

20) 중소기업구조개선지원에위한특별조치법 제정법률(안) 국무회의자료, 95.9.28

21)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도시재개발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의 절차를 말함

일정금액 이하로 유도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9조)

사. 중소기업이 일시적이고 전문적인 노동수요에 신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하에 노동자 파견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V. 소비자보호법

상적유통의 영업활동에 관한 법령은 대부분 영업활동에 관한 규제와 소비자보호를 함께 규정하고 있다. 본절에서는 소비자보호에 대한 일반법적인 지위에 있는 소비자 보호법에 대하여 개관하기로 한다. 1986.12.31 제정된 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이 법 제3조에서는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①안전의 권리 ②알 권리 ③선택할 권리 ④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⑤피해보상을 받을 권리 ⑥교육을 받을 권리 ⑦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향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2장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의 실현을 위한 의무를 규정하고 ①위해방지의 기준제정 ②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 ③표시기준의 제정 ④광고의 기준제정 ⑤거래의 적정화 ⑥소비자계몽 및 교육 ⑦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조치 ⑧시험·검사시설의 설치운명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장 사업자의 의무에서는 ①소비자보호에의 협력 ②소비자보호를 위해 국가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각종 기준의 준수 ③소비자피해보상기구의 설치운명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4장·제6장에서는 소비자단체와 소비자보호원의 업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부 표>

소 비 자 단 체	소 비 자 보 호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소비자보호시책에 관한 건의</li> <li>○ 물품 또는 용역 대한 시험·검사 및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li> <li>○ 소비자문제에 대한 조사연구</li> <li>○ 소비자의 교육 및 계몽</li> <li>○ 소비자불만 및 피해의 해결을 위한 상담, 정보제공 및 자율적 구제의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비자단체의 물품의 품질, 성능, 성분 등에 관한 시험·검사로서 전문적인 설비를 필요로하는 시험검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가 설치, 지정한 기관이나 한국소비자보호원의 검사를 거쳐야 공표가 가능</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비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li> <li>○ 물품 및 용역의 규격·품질·안전성 등에 관한 시험·검사 또는 조사</li> <li>○ 소비자보호시책의 연구 및 건의</li> <li>○ 소비생활 합리화를 위한 정보의 수집과 제공</li> <li>○ 소비자교육 및 홍보</li> <li>○ 국민생활의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조사·연구</li> <li>○ 기타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비자분쟁의 조정을 위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li> </ul> </li> </ul>

유통관련 주요법규

구 분	법 률 명	주무부서
건축관련 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계획법</li> <li>○ 건축법</li> <li>○ 주차장법</li> <li>○ 도시교통정비촉진법</li> <li>○ 수도권정비계획법</li> </ul>	건설교통부(도시계획과) " (건축과) " (교통영향평가과) " (육상교통기획과) " (수도권기획과)
영업활동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소매업진흥법</li> <li>○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li> <li>○ 할부거래에관한법률</li> <li>○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li> <li>○ 물가안정에관한법률</li> <li>○ 부정경쟁방지법</li> </ul>	통상산업부(산업유통과) " " 한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촉진과) 재정경제원(물가정책과) 특허청(조사과)
유통산업 지원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li> <li>○ 중소기업구조개선지원율</li> <li>○ 한특별조치법(안)</li> </ul>	통상산업부(산업유통과) 통상산업부 (중소기업정책과)
소비자보호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비자보호법</li> </ul>	재정경제원(소비자정책과) (소비자보호원)